

보도 일시	2022. 11. 17.(목) 10:00	배포 일시	2022. 11. 17.(목) 08:3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262)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선경 (044-200-4263)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진 민 (044-200-4585)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사무관 조형수 (044-200-4453)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 한호영 (044-200-4486)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확산, 배달앱 약관 자진 시정 등 6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 등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로 선발했다.

등급	주제	수상자
탁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	진민 사무관
탁월	오픈마켓, 배달앱 불공정약관 자율시정 유도	조형수 설민아 사무관
우수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박설민 서기관 한호영 김경원 사무관

-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공정위는 올해 총 17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1분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 물류·IT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등 6명
(2분기) 유통분야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 숙박업 광고계약서 자율시정 유도 등 5명

1

납품단가 제값받기 추진

1. 업무 여건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은 거래가 단절될 것을 걱정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전년 대비 두바이유 45%, 니켈 23%, 나프타 22% 상승('22.7월 산업부 공시 기준)

○ 이에 원·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도입이 시급하였다.

*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여 미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계약

○ 그러나, 원사업자들은 연동계약이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여 도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 또한, 연동계약의 국내·외 사례가 거의 없고, 납품단가 결정 방식이 업종·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체결 방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2. 납품단가 연동계약서 자율적 확산

□ 진민 사무관(기업거래정책과)은 다양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실태에 맞는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용역·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발굴·제시하였다.

* 주기적 반영(특정 시점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 유사사급(원사업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 등

- 또한, 다양한 기준·방식·사례가 포함된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하여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동계약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도입·확산되도록 유도하였다.

* 공정거래협약 대상 기업 194개사와 현장 설명회 개최(3회)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시 가점 등

- 그 결과, 원사업자 44개사, 수급사업자 317개사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하였고,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사례는 관련 법률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연동계약서 양식과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납품단가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 연동계약에 부정적이었던 기업들의 실제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예시 >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대상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i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연동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연동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6. 연동주기	1개월
7. 연동일	매월 1일
8. 반영시점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00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2

오픈마켓 및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

1. 업무 여건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및 음식배달 이용**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도 늘고 있었다.

* 온라인 쇼핑 거래액 : ('19)136조원 → ('20)157조원 → ('21)187조원

**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규모 : ('19)9.7조원 → ('20)17.3조원 → ('21)25.7조원

*** 최근 5년간 플랫폼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이 69% 차지

-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거래상지위 차이를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약관조항에 대한 빠른 시정*이 필요하였다.

* 불공정약관은 다수의 계약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므로 최대한 빨리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그러나 오픈마켓·배달앱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 수가 많아 약관 시정의 파급효과가 매우 커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2. 약관 자율시정으로 불공정계약관행 개선

- 조형수·설민아 사무관(약관심사과)은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7개 오픈마켓①과 3개 배달앱② 사업자 이용약관의 자율시정을 이끌어 냈다.

①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②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주요 자진시정 내용은 일방적 계약해지나 회원의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등의 유형의 약관조항들이다.

- 시정된 약관은 약 30만 개 오픈마켓과 약 20만 개 배달앱 입점업체에게 적용된다.

- 이번 사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쇼핑·음식배달업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취지에 맞게

- 사업자들이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 '판매자 이용약관' 주요 시정 내용 >

*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14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 **자진 시정**

구 분	사업자	시정 前	시정 後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 등 명확치 않은 사유로 결제 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등 제재 가능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시정
의사표시 의제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불리하게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 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의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	불리하게 내용 변경시 개별 통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조항 고지, 해당 약관 동의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 조항 삭제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네이버 위메프 쿠팡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 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 가능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등 판매자 게시물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배달앱 사업자 '음식업주 이용약관' 주요 시정 내용 >

* 부당한 계약해지, 회원 저작물을 제한없이 사용하는 등의 **4개 유형**의 약관조항 **자진 시정**

구 분	사업자	시정 前	시정 後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 가능,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 하는 경우' 등 명확치 않은 사유로 계약해지·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 부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배달의민족 요기요	계약해지 시 회사만이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불명확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1. 업무 여건

-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상존하였다.
 - 이에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였다.
-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하였으나 그 시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자율규제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선행 사례가 부족하여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 간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 플랫폼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등

- 한편 플랫폼 업종*마다 사업형태 및 구조, 불공정 이슈 등이 상이하여 통용되는 일률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예)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앱마켓, 가격비교사이트, 택시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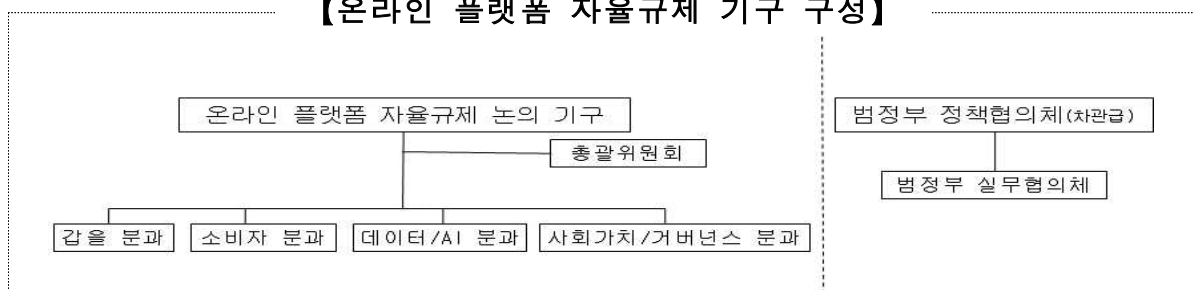
2. 실효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

- 박설민 서기관, 한호영·김경원 사무관(시장감시총괄과)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율규제 논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플랫폼 자율규제는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사안으로 원활한 상호협조를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다.

* 공정위, 기재부, 과기부, 방통위, 중기부, 개보위, 고용부 등

-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자율 규제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분과 회의에는 주요 오픈마켓·배달앱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간 주도하에 업종별 이슈 선정,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갑을 분과에서는 입점계약 관행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다수 소비자피해 사안 책임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구성】



-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한기정 위원장이 배달앱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함께 배달앱 입점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배달앱 3사에게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당부하였다.
- 이번 사례는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 민간 자율기구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및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5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공정위는 올해 총 17명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2022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공현 사무관	김유일 사무관	유형주 사무관	김민주 사무관	이창우 사무관	나경복 사무관
					
안응철 조사관	강승빈 사무관	전용주 사무관	김용진 사무관	박주영 조사관	진민 사무관
					
조형수 사무관	설민아 사무관	박설민 서기관	한호영 사무관	김경원 사무관	

※ 관련 주요 보도자료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22.8.12.)”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22.9.14.)”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22.8.25.)”
 “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시정(’22.9.4.)”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22.8.19.)”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22.9.1.)”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외식업 현장 방문(’22.9.22.)”